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북한이탈주민 대표단체 설립 근거 마련〉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947)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충권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4. 8. 19.
3. 회 부 일 : 2024. 8.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3만 4천명 시대에 도래하였으나 국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 여건이나 자조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통일부에는 약 130여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인단체가 등록·운영 중이나 이들 단체간 연대나 협력 활동은 제한적이며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구심점도 부족한 상황임.

한편,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회는 정부정책에 따른 지원이나 배려의 대상이 되기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도적 역할과 사회공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먼저 온 통일’로서 남북한 주민을 이어주고 북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정착지원·통일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 수행이 충분히 가능함.

이에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를 설립하여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조활동을 유도하여 각종 사회공헌 역할을 촉진하고자 현행법에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두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2(단체의 설립) ①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북한이탈주민 생활향상,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4. 지역사회 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사회공헌 활동 5. 북한이탈주민 관련 주요 정책 건의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권익향상을 위한 국내외 인식개선 및 여론조성사업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운영과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3만 4,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통일부에 등록된 탈북민 관련 비영리법인은 '24.9월 기준 101개, 비영리민간단체 29개로 총 130개의 단체가 있음.¹⁾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단위: 명)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6	누적
남	302	188	168	202	72	40	35	32	10	9,552
여	1,116	939	969	845	157	23	32	164	95	24,631
합계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105	34,183

자료: 통일부(2024년 6월 기준)

□ 개정안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법정 단체로서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주도의 주요 정책 건의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권익향상을 위한 국내외 인식개선 및 여론조성사업,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관련자료 후첨

개정안에 따라 법정 단체가 설립된다면 통일부가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북한이탈주민 대표 단체를 통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 등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의 보완 등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정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임으로, 그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 현재 유사한 법정 단체로는 이북도민중앙연합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등이 있으며, 개정안은 전후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유사 단체에 대한 입법례 〉

단체명 (주무부처)	지원규모 (23년 기준)	관련 법적 근거
전후납북피해자 가족연합회 (통일부)	1.85억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북도민회 (행안부)	5억원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일천만이산가족 위원회 (통일부)	1억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통일부

□ 현재 정부는 이 법 제30조²⁾에 따라 재단 법인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미 통일부에 등록한 북한이탈주민 단체가 130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8의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기존의 단체와 별도로 개정안에 따라 법정 단체를 새롭게 설립하게 될 경우 기존 단체와의 중복 및 갈등 우려가 있으므로, 대표단체 설립에 관하여 기존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들과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과거, 전후남북피해자가족연합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500여명 정도의 전후 남북피해자가 6개의 단체를 두고 있었는데, 이를 통합하여 1개의 대표단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바 있음.

〈 전후남북자피해자가족연합회 설립 개요 〉

(1) 추진 경과

- '04.4 국가인권위원회, 남북자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 '07.4.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07.10.28 시행령 제정 및 법률 시행
- '07.11.30 「남북피해자보상지원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및 남북피해자지원단(통일부 소속) 설치
- '07.10.28.~'10.10.27 피해위로금 신청 접수(신청기간 3년)
 - * 신청기간 중 피해위로금 등 보상금은 총 425건, 145억원 지급('11.10.31 기준)
- '11.4.28 전후남북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1.10.29 발효
 - 남북자 법정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
- '11.10.31 남북피해자지원단 업무 종료, 관련 업무 이산가족과로 이관
- '18.12.24 전후남북자법 개정, '19.3.25. 시행
 - 위원회 소속 변경(국무총리→통일부) 및 남북피해자 추가 보상 신청(접수기간 : '19.3.25.~'20.3.24.) 추진
 - * 남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등의 보상업무가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관련

업무가 통일부로 이관된 상황을 감안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

- '20.1.7, 시행령 개정 추진 완료(시행령 제6조의2, 국무총리→통일부장관)

(2) 설립 근거

- 전후납북자법 개정 법률 시행(2011.10.29)에 따라 단체 설립근거 마련
 - * 법 29조 1항 :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 * 보조금(사업비 지원) 지원 근거는 법 제29조7항 (2012년부터 지원)
- 전후납북자법 개정 법률 시행(2011.10.29)에 따라 단체 설립근거 마련

(3) 법정단체 설립 경과

- 전후납북자법 개정 시행('11.10.29) 이후에도 납북피해가족들이 화합하지 못하여 자율적 설립이 지연
 - 납북피해가족간 화합을 위해 납북자 단체 대표 면담, 권역별 설명회, 문서 협의 수차례 실시
 - 창립총회 공고('12.6.14, 조선일보) 및 총회 개최(6.23, 프란시스코 교육회관)
 - 통일부장관, 법정단체 설립 허가('12.8.7)
 - 비영리법인 사업자 등록(성남세무서, '12.8.23)

(4) 단체 개요

- 설립일 : 2012.8.7. (「전후납북자법」 제29조에 따라 법정단체 등록)
- 조직·규모 : 최성룡 이사장 및 이사 5명, 회원 300여명, 전국 5개 지부(서울 / 경기·인천 / 강원도 / 충청·전라도 / 경상도) 운영
- 주요활동 : 납북피해자 권익증진 및 생활지원, 국내외 홍보 활동 등
- 국고보조금 : 1.85억원('22년)
 - △납북피해가족 위로 및 화합도모 51백만원, △권익증진 및 홍보 12백만원, △의료비 및 생계 지원 80백만원, △단체 운영지원 42백만원 등
 - 국고보조금은 △'12~'15년 100백만원, △'16~'18년 150백만원, △'19년~현재 185백만원 지원

자료: 통일부

□ 통일부는 탈북민 사회 대표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탈북민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상부상조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인식개선과 남북 주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단체 지원의 범위를 넘어 남북자나 보훈단체와 같이 수익사업 등을 허용하는 등 확대하기 보다는 사업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법무부는 법정단체로서의 지위 인정과 관련, 이미 통일부 등록 북한이탈주민 단체와 남북하나재단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와 업무중복성, 기타 보훈단체 등의 사례와 비교하여 법정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법인 설립 요건과 수익사업 승인 기준 및 제재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267

[참고1] 비영리법인(101개)

(‘24.9월 기준)

연번	단 체 명	소재지	사단/재단	허가일자
1	탈북자동지회*	서울 송파구	사단법인	1999.1.26.
2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	서울 강남구	사단법인	2003.3.20.
3	평화디딤돌	서울 양천구	사단법인	2003.5.17.
4	좋은씨앗(하늘꿈학교)	서울 송파구	사단법인	2003.8.1.
5	두리하나	서울 관악구	사단법인	2003.11.3.
6	NK인포메이션센터*	서울 동대문구	사단법인	2004.7.28.
7	여명	서울 중구	사단법인	2005.3.25.
8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서울 양천구	사단법인	2005.2.22.
9	숭의동지회*	서울 금천구	사단법인	2006.11.16.
10	사랑담는사람들	서울 강남구	사단법인	2007.6.8.
11	한반도평화연구원	서울 중구	사단법인	2007.12.27.
12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부산 동구	사단법인	2008.8.11.
13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서울 종로구	사단법인	2008.9.19.
14	새터민회*	대전 동구	사단법인	2008.10.27.
15	우리탈북민정착기구	서울 강남구	사단법인	2009.5.18.
16	자유통일문화원*	서울 종로구	사단법인	2009.8.13.
17	미래나눔재단	서울 여의도	재단법인	2009.8.21.
18	한꿈	경기 의정부시	사단법인	2009.10.21.
19	한반도통일연합회*	서울 양천구	사단법인	2010.3.15.
20	새문화복지연합회*	서울 강서구	사단법인	2010.6.16.
21	세이프엔케이	서울 강남구	사단법인	2010.7.23.
22	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	서울 구로구	사단법인	2010.8.20.
23	탈북동포사회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사단법인	2010.11.26.
24	유니코문화교류협회*	서울 중구	사단법인	2011.2.22.
25	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	인천 부평구	사단법인	2011.5.30.
26	한우리	충남 아산시	사단법인	2011.6.11.

연번	단 체 명	소재지	사단/재단	허가일자
27	북한이탈주민자립지원협의회	경남 김해시	사단법인	2011.7.22.
28	함께일하는사람들*	서울 성북구	사단법인	2011.7.27.
29	탈북여성지원 지에프에스 우물가	서울 중구	사단법인	2011.8.9.
30	드림	충남 천안시	사단법인	2011.9.16.
31	우리들의 성장이야기	서울 성북구	사단법인	2011.10.28.
32	한민족밀알공동체	서울 종로구	사단법인	2011.11.3.
33	느헤미야코리아	서울 서초구	사단법인	2011.11.3.
34	늘푸른	서울 강서구	사단법인	2012.3.26.
35	물망초	서울 영등포구	사단법인	2012.6.1.
36	NK체육단*	서울 송파구	사단법인	2012.6.18.
37	한마음나눔회*	경기 광명시	사단법인	2012.8.16.
38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경기 고양시	사단법인	2013.6.11.
39	북한체제트라우마치유상담센터*	서울 강서구	사단법인	2013.7.9.
40	해솔직업사관학교	강원 춘천시	사단법인	2013.7.23.
41	동서남북	서울 강동구	사단법인	2013.10.11.
42	큰샘*	서울 강남구	사단법인	2013.10.11.
43	북한이탈주민연합*	경남 창원시	사단법인	2013.10.11.
44	하나로복지회	서울 금천구	사단법인	2013.11.7.
45	한민족예술문화진흥협회*	서울 영등포구	사단법인	2014.1.6.
46	새일아카데미	서울 동작구	사단법인	2014.4.2.
47	크로싱	서울 동작구	사단법인	2014.6.25.
48	시호나눔재단	서울 강남구	사단법인	2014.8.4.
49	새삶*	서울 종로구	사단법인	2014.10.20.
50	더함께새희망	서울 양천구	사단법인	2014.12.1.
51	통일길벗협회*	서울 강남구	사단법인	2014.12.15.
52	통일미래연대*	경기도 광명	사단법인	2014.12.31.
53	하늘우산	서울 서대문구	사단법인	2015.1.14.
54	비전코리아*	서울 종로구	사단법인	2015.2.4.

연번	단 체 명	소재지	사단/재단	허가일자
55	남북사랑네트워크	서울 구로구	사단법인	2015.5.8.
56	하나사랑협회*	서울 종로구	사단법인	2015.9.17.
57	하나의코리아	경남 창원시	사단법인	2016.4.18.
58	반석	서울 서초구	사단법인	2016.4.27.
59	새한누리	서울 광진구	사단법인	2016.6.3.
60	평화통일예술인연합회*	경기 시흥시	사단법인	2016.12.14.
61	탈북민 사랑나눔 운동본부	광주 광산구	사단법인	2017.2.14.
62	평화와 함께	경기 의정부	사단법인	2017.4.14.
63	우리들학교	서울 관악구	사단법인	2017.6.2.
64	남북통합복지협회	서울 영등포구	사단법인	2017.7.12.
65	생명그루	서울 중랑구	사단법인	2017.11.2.
66	늘푸른상담협회*	서울 양천구	사단법인	2017.12.21.
67	예평글로벌비전	부산 사하구	사단법인	2018.1.31.
68	미래를 위한 사랑 나눔 협회*	대전 서구	사단법인	2018.2.20.
69	통일한국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사단법인	2018.4.9.
70	통일지향협의회*	경남 김해시	사단법인	2018.7.30.
71	비온드더바운더리	서울 중구	사단법인	2019.5.29.
72	통일의 징검다리 우리온*	서울 양천구	사단법인	2019.5.29.
73	그날까지동족사랑연합	서울 서초구	사단법인	2019.10.25.
74	THINK	서울 서초구	사단법인	2019.11.1.
75	미래희망나눔	경남 양산시	사단법인	2019.11.1.
76	한울타리통일모임	서울 서초구	사단법인	2019.11.7.
77	유니시드	서울 종로구	사단법인	2021.6.4.
78	하나행복나눔봉사회	서울 서대문구	사단법인	2021.6.10.
79	새한반도야구회	서울 중구	사단법인	2021.7.1.
80	위로	경기도 김포시	사단법인	2021.9.17.
81	통일준비학교총연합회	서울시 관악구	사단법인	2022.3.21.
82	한반도미래행복연합*	서울시 관악구	사단법인	2022.4.18.

연번	단 체 명	소재지	사단/재단	허가일자
83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서울시 성북구	재단법인	2022.4.20.
84	하모니골드협회	충청남도 당진시	사단법인	2022.8.8.
85	너와락 나눔재단	서울시 마포구	재단법인	2022.8.22.
86	(사)북한회복국민운동	경기도 파주시	사단법인	2022.9.29.
87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	서울시 마포구	사단법인	2022.12.6.
88	해마루	서울시 강동구	사단법인	2022.12.20.
89	(사)통일을위한환경과인권*	서울시 강서구	사단법인	2023.6.8.
90	백두한라협회*	대전광역시 동구	사단법인	2023.6.15.
91	새삶인협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단법인	2023.8.11.
92	북한자유화추진총연맹*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단법인	2023.8.24.
93	남북공동체협의회*	경상남도 김해시	사단법인	2023.10.5.
94	탈북민공익활동지원연합*	충청남도 아산시	사단법인	2023.10.18.
95	남북통일애국본부	경기도 파주시	사단법인	2023.12.12.
96	하나로드림*	서울시 구로구	사단법인	2024.02.01.
97	평양민족통일예술단*	경기도 남양주시	사단법인	2024.03.26.
98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	인천시 남동구	사단법인	2024.04.18.
99	빛 가운데	충청북도 청주시	사단법인	2024.05.21.
100	이엘엠	서울시 중구	사단법인	2024.09.13.
101	딱친구	경상남도 김해시	사단법인	2024.09.13.

* 대표가 탈북민인 비영리법인(37개)

[참고2] 비영리 민간단체(29개)

(‘24.9월 기준)

연번	단 체 명	소재지	등록일	비고
1	(사)평화디딤돌	서울 양천구	2004.3.11.	비영리법인
2	(사)좋은씨앗	경기 성남시	2004.12.8.	비영리법인
3	탈북청소년교육공동체 셋넷학교	전라북도 남원	2005.2.19.	
4	(사)여명	서울 중구	2005.9.2.	비영리법인
5	(사)통일을준비하는 탈북자협회*	서울 양천구	2005.12.21.	비영리법인
6	(사)한꿈	경기 의정부시	2007.5.16.	비영리법인
7	(사)함께일하는사람들*	서울 노원구	2010.3.11.	비영리법인
8	(사)늘푸른상담협회	서울 양천구	2010.4.15.	비영리법인
9	(사)승의동지회*	서울 금천구	2010.6.9.	비영리법인
10	(사)남북사랑네트워크	서울 구로구	2011.1.18.	비영리법인
11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 우리집	경기 안산시	2011.8.26.	
12	NK.C에바다선교회	서울 종로구	2013.4.15.	
13	(사)세이프엔케이	서울 강남구	2013.12.13.	비영리법인
14	(사)물망초	서울 서초구	2014.3.10.	비영리법인
15	(사)큰샘*	서울 강남구	2014.11.10.	비영리법인
16	(사)탈북자동지회*	서울 송파구	2014.12.29.	비영리법인
17	(사)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	서울 영등포구	2014.12.31.	비영리법인
18	(사)통일미래연대*	서울 구로구	2015.1.9.	비영리법인
19	(사)새삶*	서울 종로구	2015.3.11.	비영리법인
20	북한이탈주민장애인협회*	서울 동대문구	2016.1.13.	
21	(사)북한개발연구소*	서울 마포구	2017.12.20.	비영리법인
22	(사)미래희망나눔센터	경남 양산시	2018.9.4.	비영리법인
23	(사)더함께새희망	서울 양천구	2018.10.5.	비영리법인
24	우리-One(N.S Woori-One)*	충남 아산시	2020.3.6.	
25	(사)THINK	서울 중구	2021.1.20.	비영리법인
26	경기여명연합회*	인천 남동구	2022.9.5.	
27	남북우정사랑봉사회*	대구 달서구	2023.11.22.	
28	통일나루터*	인천시 남동구	2024.5.2.	
29	북한이탈주민학회	서울시 마포구	2024.7.31.	

* 대표가 탈북민인 비영리 민간단체(13개)